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5)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성남시의회
	제284회(임시회)

2023.07.17.(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 《검토사항》

- 조례안 8건  
(제정 2건, 일부개정 6건)
- 민간위탁 동의안 7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염대석)

#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위

- 제출자: 성남시장
- 의안번호: 제5182호

## 2. 제안이유

-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운영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 안 제14조)
  -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조문 수정(둔다. → 둘 수 있다.)
  - 임기 내용 삭제 및 수정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심의·의결한 날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호)
  - 해촉 내용 삭제
  - 부위원장 관련 내용 삭제
  - 정기회의 규정 삭제

##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
  - 기 타
    - 입법예고(2023. 04. 10. ~ 05. 21.): 의견 없음
-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 5. 검토 의견

### 가.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안전 발생 시 위원회 임시 위촉 및 소집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 위원회 정비 추진방안 [주민자치과-16491호(2022.08.16.)]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개최</li> <li>• 비효율</li> </ul>	⇒ <b>임의규정화 검토</b> (해당부서→주민자치과→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b>신설 위원회</b>	⇒ <b>입법예고 전 사전협의 이행</b>
	비효율 위원회 <small>*장기간 미개최, 구성·운영개선 필요 위원회 등</small>	⇒ <b>존치 필요성 재검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간 미개최</li> <li>• 기능 유사중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 독립</li> </ul>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전) 협의체 전환 (안전발생 빈도 少) 비상설화	

#### ▶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사업

1. 복지정보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지역복지종합정보 안내
3. 지역복지홍보, 출판사업
4. 복지정보제공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5. 사회복지 시민교육
6. 사회복지환경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7. 그 밖에 지역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나.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3조** 복지이음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의 상설 설치 조항인 “둔다.” 를 “둘 수 있다.” 로 개정하여 비상설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4조제5항**은 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비상설화 되면서 필요 없는 조문으로 삭제하고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1)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  
→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구성하고, 심의·의결한 날에 해산한 것으로 개정하였음.
-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위원회 비상설화 되면서 필요 없는 조문을 삭제함.
  - 제16조에서는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
  - 제17조(중전의 제16조)제2항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삭제
  - 제18조(중전의 제1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제2항에서 명시했던 회의(정기·임시)에 관한 조항을 삭제

**다. 종합검토 의견**

- 복지이음정보센터 운영위원회는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5회 개최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임.

**※ 복지이음정보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최근 3년간)**

구 분	개최 횟수	심 의 내 용
2020년	2회 (서면심의)	▶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 ▶ 운영위원 위촉 및 부위원장 선출
2021년	2회 (서면심의)	▶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 ▶ 2021년 주요사업 및 스마트복지 활성화 추진보고
2022년	1회 (대면심의)	▶ 2021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

1)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항 생략”

- 조례상 복지이음정보센터 운영위원회는 주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필수적 사항을 다루어지고 있지만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비효율 위원회로 분류되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p>제1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u></p> <p>② <u>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③ ~ ⑤ (생략)</p> <p>제19조 ~ 제21조 (생략)</p>	<p>제1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u>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u></p> <p><u>&lt;삭제&gt;</u></p> <p>② ~ ④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p>제18조 ~ 제20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p>

# 관계 법령 발췌서

##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1.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 둘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9. 1. 15.>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2. 1. 26.]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